

의안번호	2208534
의 퇴 인	한병도 의원
회 답 일	2025. 4. 3.
추계번호	25B1189

귀농어 ·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4조(박람회 등의 개최) 제2항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귀농어·귀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재량규정
2	안 제16조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에 대한 우대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의 특수상황지역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창업, 주택구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세제상·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4조(박람회 등의 개최) 제2항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6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에 대한 우대지원)	

2. 상세 사유

□ 귀농어·귀촌 체험 기회 제공(안 제14조제2항 신설)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귀농어·귀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해양수산부는 어촌에서 살아보기, 도시민 기술교육 등의 사업을 통해 귀어·귀촌 희망자의 어촌 체험 및 어업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음

[표 1] 해양수산부 귀어·귀촌 체험 기회 제공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내용	2025 예산
어촌소멸대응지원 ¹⁾	어촌에서 살아보기 (귀어인의 집)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촌체험 후 귀어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를 조성하여 일정기간 동안 제공·지원	150
	도시민 기술교육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업기술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 교육비를 지원 * 5~8주간 교육	1,120

자료: 해양수산부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까지 귀농귀촌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농촌체험활동, 임시 주거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고, 해당 사업으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인의 집’ 조성 등을 추진하였음(’24년 폐지)
 - (’22) 141억원 → (’23) 127억원 → (’24) 폐지
 -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촌 실행 전 농촌에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23년 기준, 126개 마을 운영)
 - 귀농인의 집: 귀농·귀촌 희망자가 거주지나 영농기반 마련 전까지 일정기간 영농기술 습득 및 농촌체험이 가능한 임시 거처 조성(’22년 까지, 총 439개소 조성)

1) 지역발전특별회계, 3347-300

- 개정안에 따라 귀농어·귀촌 체험 기회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경우 폐지된 사업의 부활, 현행 사업의 확대, 신규 사업 추진 등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향후 추진될 귀농어·귀촌 체험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에 대한 우대지원(안 제16조)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창업, 주택구입자금 등을 지원할 때 세제상·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²⁾ 제2조제10호의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외에 같은 법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를 추가하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세제상, 금리상 우대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고,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과 해양수산부의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을 통해 창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고 있음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상황지역"이란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지리적·사회적 요인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나.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섬. 다만,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섬은 제외한다.

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표 2]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2025년 기준)

- 지원대상: ①귀농인(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인이 되고자 농촌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자), ②재촌비농업인(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③귀농희망자(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 지원내용: 농업창업(세대당 3억원 한도),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자금(세대당 7,500만원 한도) 융자(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2025년 융자한도: 150,000백만원

자료: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지침(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2025년 기준)

- 지원대상: ①귀어업인(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도 포함)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자), ②재촌비어업인(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
- 지원내용: 창업자금(사업대상자당 3억원 한도), 주택구입 지원 자금(세대당 7,500만원 한도) 융자(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대출금리 연 1.5%)
- 2025년 예산: 11,629백만원

자료: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지침(해양수산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에 따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창업, 주택구입자금 등을 지원할 때 세제상·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의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외에 같은 법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를 추가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지원 사업 시행 방식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추가적인 세제상·금리상의 우대조치 실시 여부 및 사업 대상, 지원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음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등도 현재 실시 중인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과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

[참고자료 1] 귀농어·귀촌 지원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내용	2025 예산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170-407)	귀농귀촌교육 귀농귀촌박람회 귀농귀촌실태조사 귀농귀촌종합센터운영 귀농귀촌유치지원	귀농·귀촌 희망자 대상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상담·교육 등 체계적인 사 전준비를 통한 안정적 정착지원	7,232
귀농귀촌 활성화지원(정보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70-408)	귀농귀촌통합플랫폼 구축·운영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준비에서 정 착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 하는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1,640
농업자금이자보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38-30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융자, 이차보전)	귀농 희망자 대상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 업·농촌 정착 유도	150,000 (융자한도)
어촌소멸대응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347-300)	귀어귀촌 종합센터 운영	귀어·귀촌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 정 보제공, 상담 및 멘토링 등의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	1,587
	어촌에서 살아보기 (귀어인의 집)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촌체험 후 귀 어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를 조성하 여, 일정기간 동안 제공·지원	150
	도시민 기술교육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촌에 체류하면 서 어업기술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 교육비를 지원 * 5~8주간 교육	1,120
청년어촌정착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347-363)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어업에 관심이 있는 우수 청년인력 에게 어업창업과 어촌 정착을 유도 하기 위해 정착자금을 지원	3,074
	청년바다마을 조성	청년 귀어인 등에게 주거, 어업 일자 리, 어촌계 가입 등 패키지 지원	3,000
수산금융자금이자보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450-301)	어촌정착 지원자금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 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 * 최대 3.75억원, 연이율 1.5%	11,62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참고자료 2]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2022년 기준)’ 개요³⁾

- (목적) 귀농귀촌 실행 전에 도시민에게 농촌에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주민과의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 정착 유도
- (예 산) '21년 귀농귀촌유치지원사업* 124.8억원(국비) 활용
 - * 지자체보조사업(국비 50%, 지방비 50%), 시·군 당 최대 4억원(국비+지방비)
- (사업규모) 500가구(1인가구 포함)
- (추진체계) 각 도(총괄기획·관리·홍보) 및 시군 주관하에 운영자 및 계획 확정, 운영자(마을·공동체)는 참가자에게 주거·체험프로그램·일자리(주2회) 제공
- (지원대상)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 농촌지역 취·창업 희망 청년층, 농업분야 이직을 희망하는 40대, 은퇴 이후 귀촌을 희망하는 50~60대 등 귀농귀촌 희망자 특성별 프로그램 운영*
 - * 참가자는 본인이 원하는 유형·지역을 선택하여 프로그램 참여
- (운영유형) 귀농형·귀촌형은 마을주도, 프로젝트참여형은 지역공동체 주도
 - 귀농형 : 지역 주요작물 재배기술, 농기계 사용법 교육 및 영농 근로 등
 - 귀촌형 : 농촌이해, 주민교류, 지역탐색 등 농촌이주 여건 탐색·체험 지원
 - 프로젝트참여형 : 지역 사회적경제조직과 협력하여 청년들이 다양한 농촌 일자리·활동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단기 프로젝트 기획, 참여기회 제공
- (지원내용) 참가자(임시주거·연수비), 운영자(운영비·인센티브 등) 지원
 - 임시주거 : 지역민과 교류할 수 있도록 마을 내 위치한 농촌체험마을·귀농인의 집 등 활용, 참가자는 무료 이용
 - 연수비 : 월 15일 이상 의무 프로그램 참여 시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
 - 운영비 : 참가자 1인당 월 40만원 한도 체험비·보험료·기타경비 등 지원
 - 운영자 인센티브 : 프로그램 운영자에 참가 1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 전담 멘토수당 : 전담멘토 별도지정시 가구당 월 30만원 지원 가능

3)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중 발췌

[참고자료 3]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15호)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경상북도 군위군이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구감소지역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 (총3개)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총3개)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 (총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 (총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 (총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총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총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총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총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총15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총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2.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기준일 : 2023년 7월 1일

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